



제420회 국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경제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법률안

검 토 보 고

■ 김희정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4666호)

2025. 1.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전문위원 오 세 일

목 차

I . 개요	1
II . 총괄 검토	4
1. 제정안의 체계 및 주요내용	4
2. 검토의견	6
3. 관계 부처 및 단체 의견	12
III . 주요 내용별 검토	13
1. 정의	13
2. 가정의 책임	16
3.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실태조사	18
4. 조기진단 및 개입	21
5. 교육 지원 등	23
6. 고용 및 직업훈련 등	26
7. 경계선지능인 지원기관	27
8. 지역사회통합지원체계 구축·운영	34
9. 경계선지능인교육운영위원회	36
10. 부칙	39

I. 개요

1. 김희정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4666호)

가.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김희정의원 등 27인
- (2) 제 안 일 : 2024. 10. 11.
- (3) 회 부 일 : 2024. 10. 14.

나. 제안이유

경계선지능인은 표준화된 지능 검사 결과 지능지수(IQ)가 71~84 정도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학습·취업·자립생활 등 다양한 사회분야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경계선지능인 지원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여 진단·교육 등을 지원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별로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정의 및 지원 방식이 상이하여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이에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경계선지능인의 조기진단·개입, 맞춤형 교육, 자립·고용·직업훈련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경계선지능인의 체계적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다. 주요내용

- (1) 이 법은 경계선지능인의 생애주기별 특성에 부합하는 다면적 지원을 통하여 경계선지능인이 자아를 실현하고 능동적 주체로서 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 (2) “경계선지능인”이란 발달장애인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학습능력과 인지능력의 부족으로 학습과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어 지원과 보호가 필요한 자를 말함(안 제2조).
- (3) 보건복지부장관은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8조 및 제9조).
- (4) 경계선지능인은 신청을 통해 개인의 특성을 고려한 개인별지원계획 수립을 바탕으로 지원서비스제공기관과 연계된 체계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
- (5)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계선지능인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하여 검사방법의 개발, 정보제공 및 홍보, 진단검사 실시 등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함(안 제18조).
- (6)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계선지능인에 대하여 자녀양육, 교육, 자립, 고용·직업훈련, 의료 등의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부터 제25조까지).
- (7)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대한 국가의 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경

계선지능인 관련 조사·연구 등을 위하여 한국경계선지능인개발원을 설립하도록 함(안 제26조부터 제32조까지).

- (8) 시·도지사는 경계선지능인의 권리보호 활동, 당사자와 그 가족에 대한 상담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계선지능인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효율적 처리를 위하여 경계선지능인지원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33조 및 제34조).

Ⅱ. 총괄 검토

1. 제정안의 체계 및 주요 내용

□ 제정안은 인지능력 등의 부족으로 학습 및 사회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계선지능인’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이들의 자립과 자아실현 및 사회참여를 제고하여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함을 목적으로,

6개의 장과 45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음.

□ 제정안에서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발달장애인법」”이라 함)에 따른 발달장애인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학습능력과 인지능력의 부족으로 학습 및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경계선지능인으로 정의하고,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실태조사 등에 관한 사항, 지원신청, 개인별지원계획, 양육 지원, 교육 지원, 고용 및 직업훈련 지원 등과 같은 전반적인 지원절차 및 내용에 관한 사항 등을 명시하고 있으며, 경계선지능인 지원기관으로 한국경계선지능인개발원, 경계선지능인지원센터 설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제정안의 구성 체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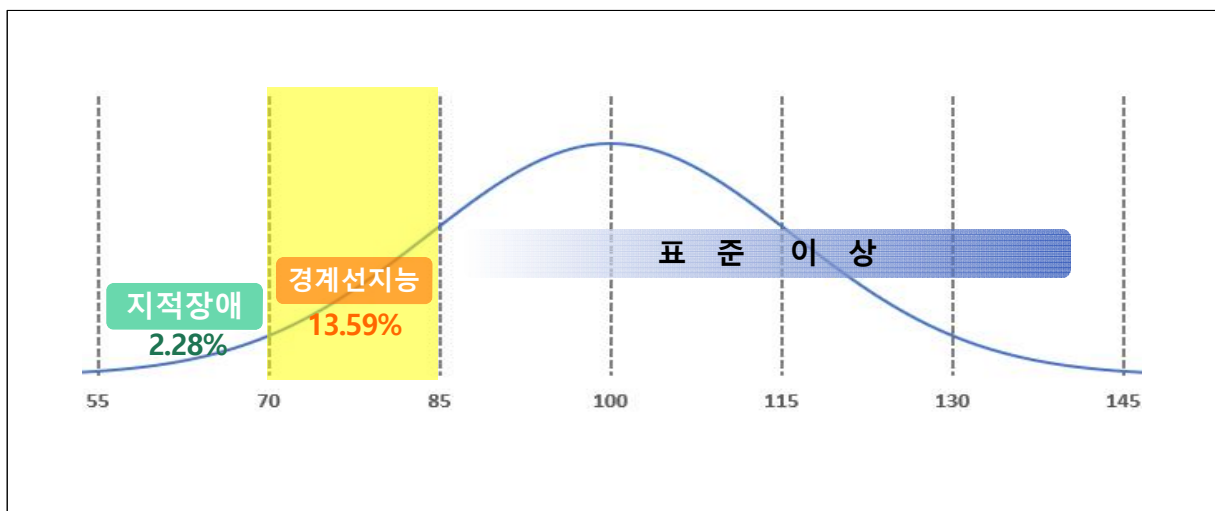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경계선지능인의 권리와 책임)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5조(국민의 책무)
	제6조(가정의 책임)
	제7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기본계획 수립 등	제8조(기본계획의 수립)
	제9조(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시행)
	제10조(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시행의 협조)
	제11조(실태조사)
제3장 권리의 보장	제12조(자기결정권의 보장)
	제13조(의사소통지원)
	제14조(형사·사법 절차상 권리보장)
	제15조(지원신청 등)
	제16조(개인별지원계획 수립)
	제17조(경계선지능인과 지원서비스제공기관 연계)
제4장 경계선지능인 지원 등	제18조(조기진단 및 개입)
	제19조(자녀양육 지원)
	제20조(교육 지원)
	제21조(자립 지원)
	제22조(고용 및 직업훈련 지원)
	제23조(평생교육 지원)
	제24조(의료 지원)
	제25조(경계선지능인의 보호자 지원)
제5장 경계선지능인 지원기관	제26조(한국경계선지능인개발원 설립 등)
	제27조(정관)
	제28조(사업계획서의 제출 등)
	제29조(보조금 및 출연 등)
	제30조(임원)
	제31조(원장)
	제32조(「민법」의 준용)
	제33조(경계선지능인지원센터)
	제34조(경계선지능인지원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제35조(지역사회통합지원체계 구축·운영)
	제36조(경계선지능학생교육운영위원회)
제6장 보칙 및 벌칙	제37조(관련 단체의 보호·육성)
	제38조(비밀유지 의무)
	제39조(지도와 감독)
	제40조(보고와 검사)
	제41조(위임·위탁)
	제42조(벌칙)
	제43조(벌칙)
	제44조(양벌규정)
부 칙	제45조(과태료)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 검토의견

□ 경계선 지능(borderline intellectual functioning)이란 71 ~ 84 사이의 지능지수로 정의되며, 지능의 정규분포를 고려할 때 전 인구의 13.59%가 이에 속함.¹⁾

- 이를 토대로 추정하면, 우리나라의 총인구 중 경계선지능인은 약 699만 명으로 추정할 수 있음.²⁾

< 지능의 정규분포 곡선 >



자료: 교육부(2024.7.3.). 제6차 사회관계장관회의 개최[보도자료]중 별첨.

□ 우리나라에는 아직까지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합의된 개념이나 정의가 없어서 느린 학습자(slow learner)로도 불리우며,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특정 장애 유형으로 분류되지 않기 때문에 학습 및 교육지도를 일반 교육과정 속에서 받고 있음.³⁾

1) 신진숙. (2010). 지적장애아 교육. 서울: 양서원.

2) 국회입법조사처. 「경계선 지능인의 현황과 향후 과제」, 이슈와논점. 2023. 6.

3) 김용훈. (2023). 경계선지능의 개념 정의의 재구조화 및 교육지원 체계 연구. 발달장애연구 (KADD), 27(1), 1-17.

- 미국 지적장애 및 발달장애 협회에서는 1961년 제6차 정의까지는 경계선 지능 범주에 속하는 사람도 지적장애로 판별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보았지만,
- 1973년 제7차 정의에서는 경계선 지능을 가진 개인들(individuals with borderline intellectual functioning)을 지적장애 범주에서 제외한 바 있음.⁴⁾
- 미국 정신의학회(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APA)에서 발간하는 정신질환 진단 및 통계 편람-5(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5, DSM-5)에서는 경계선지능인을 특정 지능지수로 정의하지 않고 임상적 주의가 필요하거나 개인의 치료와 예후에 영향을 주는 경우로 정의하고 있음.⁵⁾

□ 경계선지능인은 「장애인복지법」 및 하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지적장애의 기준인 ‘지능지수가 70 이하인 경우’⁶⁾에는 해당되지 않으므로, 현행법상 장애인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으며,

의사소통 과정, 사회활동 등에서 비장애인과 확연한 차이가 드러나지 않아 일상생활에 문제가 없어 보이나, 학교나 직장에서는 크고 작은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함에도, 대부분의 공적인 지원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음.⁷⁾

- 특히, 법적으로는 장애인 또는 특수교육대상자로 등록되지 못하

4) 변관석, & 신진숙. (2017). 경계선 지능에 관한 국내연구 동향 분석. 특수아동교육연구, 19(1), 79-109.

5) 구슬이. (2024). 경계선지능인 지원 관련 정책 및 입법동향과 과제. 경계선지능 청년 지원을 위한 정책토론회 토론문. 국회입법조사처.

6) 「장애정도판정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42호 중 “6. 지적장애 판정기준”

7) 다만, 시설보호아동, 기초학력부진학생 등 일부 취약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 정책에서는 경계선지능아동을 포함하여 지원하고 있음(시설보호아동: 보건복지부 「경계선지능아동 맞춤형 사례관리서비스」, 기초학력부진학생: 교육부 「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

기 때문에 교육훈련 지원이나 취업에 관한 복지 혜택을 거의 받을 수가 없어 자신에게 적합한 직업을 가지는 경우가 비장애인은 물론이고 상대적으로 지적인 문제가 더 있을 수 있는 지적장애인과 비교해서도 적다는 것이 가장 큰 어려움으로 지적되고 있음.⁸⁾

□ 현재 우리나라에는 경계선지능인의 개념과 이들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전반적으로 규율하고 있는 법률은 제정되어 있지 않음.

- 다만, 최근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법률안」(조승환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01376호)이 발의되어 교육위원회에서 심사 중에 있음.⁹⁾

□ 참고로, 지난 제21대 국회(2020년~2024년)에서는 경계선지능인과 관련한 1건의 결의안과 4건의 법안이 제출된 바 있으며, 이 중에서 2건의 제정안이 보건복지위원회를 소관으로 하여 심사되었으나, 모두 임기만료로 폐기된 바 있으며,

< 제21대 국회 경계선지능인 관련 결의안 및 법안 제출 현황 >

안민석의원	허영의원	최영희의원	강기윤의원	안민석의원
교육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교육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교육위원회
느린 학습자(경계선 지능인) 교육지원 종합 대책 마련을 위한 촉구 결의안 (2120017)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법률안 (2121092)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법률안 (2122534)	경계선지능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2123713)	경계선 지능 학생 교육지원에 관한 법률안 (2126168)

주 1: 괄호 안은 의안번호

8) 강옥려. (2016). 경계선급 지능 아동의 교육: 과제와 해결 방안. 한국초등교육, 27(1), 361-378.

9) 동 법안은 경계선지능인의 평생교육 지원을 목적으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센터 설립·운영에 관한 사항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음.

- 제22대 국회에서는 지금까지 총 4건의 제정안이 제출되었으며, 이 중에서 3건은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 중임.

< 제22대 국회 경계선지능인 관련 법안 제출 현황 >

조승환의원	허영의원	권칠승의원	안상훈의원
교육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경계선지능인 평생 교육 지원에 관한 법률안 (2201376)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법률안 (2203025)	경계선지능인 권리 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2203115)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법률안 (2203298)

주 1: 괄호 안은 의안번호

- 또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전반적인 지원을 위해 광역지방자치단체 조례 4개(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강원특별자치도, 충청북도)와 기초지방자치단체 조례 15개(강릉시, 전주시, 서울시 강북구, 노원구 등)가 제정되어 시행 중으로 파악되고 있음(참고자료 1: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현황).¹⁰⁾

- 특히 서울시의 경우는 2022년도에 최초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서울특별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 및 종합계획(2023년~2025년)에 따라 관련 예산을 편성하여 운영 중임(2024회계연도 기준 24.5억원).¹¹⁾

- 이 같은 상황에서 발의된 제정안은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개념을 정하고, 이들의 권리성을 강화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조기진

10)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 ‘느린학습자’ 지원 조례,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 조례 등을 제정하고 있지만, 이는 ‘교육’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학교에 재학 중인 ‘학교 내 학생’에 게만 특화된 조례라는 점에서 위 사례에서는 제외함.

11) 교육부(2024.7.3.). 제6차 사회관계장관회의 개최[보도자료]중 별첨.

단, 교육, 자립생활, 취업 등의 지원서비스를 보다 개별화되고, 장기적 차원에서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명시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취지임.

□ 다만, 제정안은 유사한 취지로 발의되어 현재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 중에 있는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법률안」(허영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03025호), 「경계선지능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권칠승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03115호),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법률안」(안상훈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03298호) 등과 일부 내용이 중복되거나, 상호 관련되고 있는 부분이 있음.

- 4건의 제정안은 모두 「발달장애인법」에 따른 발달장애인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인지능력 또는 학습능력의 부족으로 학습 및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경계선지능인으로 정의하고, 목적,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실태조사 등에 관한 사항, 자립지원, 교육지원, 고용지원 등과 같은 전반적인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은 유사하게 규정하고 있으나,

- 제명, 지원 신청 절차, 조기 발견을 위한 진단검사 실시, 지원기관 설치 여부 및 설립·운영 방식, 경계선지능학생을 위한 교육운영위원회 유무 등 구체적 사항에 관해서는 다소 차이가 있음.

□ 참고로, 경계선지능인과 관련하여 제정안과 같이 국가 차원에서의 전달체계 및 조기진단·취업·교육·직업훈련 등 전반적인 지원 사항을 법률로 규정하고 있는 국가는 없는 것으로 보이며, 일본의 경

우 교육, 스페인은 고용과 관련한 지원을 정책적으로 실시하고 있음.

<일본 및 스페인의 경계선지능인 지원 정책 사례>

<일본>¹²⁾

- 「학교교육법 시행규칙」 제140조에 따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등에서 특별지도를 필요로 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교과 수업은 통상 학급에서 실시하면서 장애에 따른 특별지도를 통급지도교실에서 실시하는 ‘통급에 의한 지도’를 시행하고 있음.
- ‘통급에 의한 지도’의 대상이 되는 학생은 시각장애인, 난청자, 지체장애인, 병약자, 언어장애인, 정서장애인, 자폐증, 학습장애인, 주의결함다동성장애인¹³⁾으로, 지적장애인은 포함되지 않음.
- 지도의 대상 중 학습장애인은 경계선지능인을 뜻하는 것으로 보이며, 일본의 문무과학성은 학습장애를 ‘기본적으로 전반적인 지적 발달이 뒤처지는 않지만, 듣고, 말하고, 읽고, 쓰고, 계산하거나, 추론하는 능력 중 특정 것의 습득과 사용에 현저한 어려움을 나타내는 다양한 상태를 가리키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음.
- ‘통급에 의한 지도’를 실시하는 경우, 대상 학생이 재적하는 학교에서 편성한 교육과정을 기초로 하여 특별교육과정을 편성해 지도를 실시하며, 학습장애인의 지도시간은 연간 10시간~280시간으로 정하고 있음.

<스페인>¹⁴⁾

- 2021년, 스페인 정부는 「경계선 지적 능력을 가진 사람들의 고용 접근성을 촉진하기 위한 적극적 조치에 관한 입법왕령」¹⁵⁾을 제정하여 ‘경계선지능인’을 장애판정척도 20%~32%¹⁶⁾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이들을 고용하는 사용자에게 2,000유로의 보조금 지급하도록 함

12) 국회입법조사처, 「경계선 지능인의 현황과 향후 과제」, 이슈와논점, 2023.6.

13) 아동기의 지속적인 주의력 부족으로 산만함, 놀이 및 학습 장애, 감정조절 장애에 의한 충동적 과다활동을 보이는 소아정신질환으로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를 의미함.

14) 국회입법조사처 제출

15) 입법왕령(Real Decreto Legislativo): 행정부가 입법부에서 위임받아 제정하는 법규로, 입헌군주제인 스페인에서는 그 명칭을 왕령(Real)으로 함.

16) 33% 이상은 지적장애인으로 지원을 받음.

3. 관계 부처 및 단체 의견

가. 보건복지부

□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생애주기별 지원을 통해 사회참여 촉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한다는 법안 취지에 공감

□ 다만, 법안 적용 대상인 경계선지능인에 대해 명확한 기준을 정립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하며, 지원내용 결정을 위해서는 서비스 욕구 파악, 전달체계 수립 등을 위한 실태조사 및 전문가·이해당사자·관계부처 간의 충분한 논의가 필요함.

※ 21대 국회에서도 발의된 유사법안에 대해 장애계 일부의 반대의견이 있었음

□ 경계선지능(IQ 71~84)에 국한하여 지원대상을 정하기보다는, 다양한 요인으로 인한 학습 및 사회참여, 자립생활이 어려운 정책 수요에 대응하여 맞춤형 기준과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복지 사각지대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소할 필요가 있으며,

□ 현재 진행 중인 「경계선 지능인 현황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한국보건사회연구원, '24.8월~'25.2월) 등을 기반으로 영역별 생활실태, 정책수요, 지원방안, 별도의 지원법 제정 필요성 등에 대한 검토와 사회적 합의를 선행할 필요가 있음.

Ⅲ. 주요 내용별 검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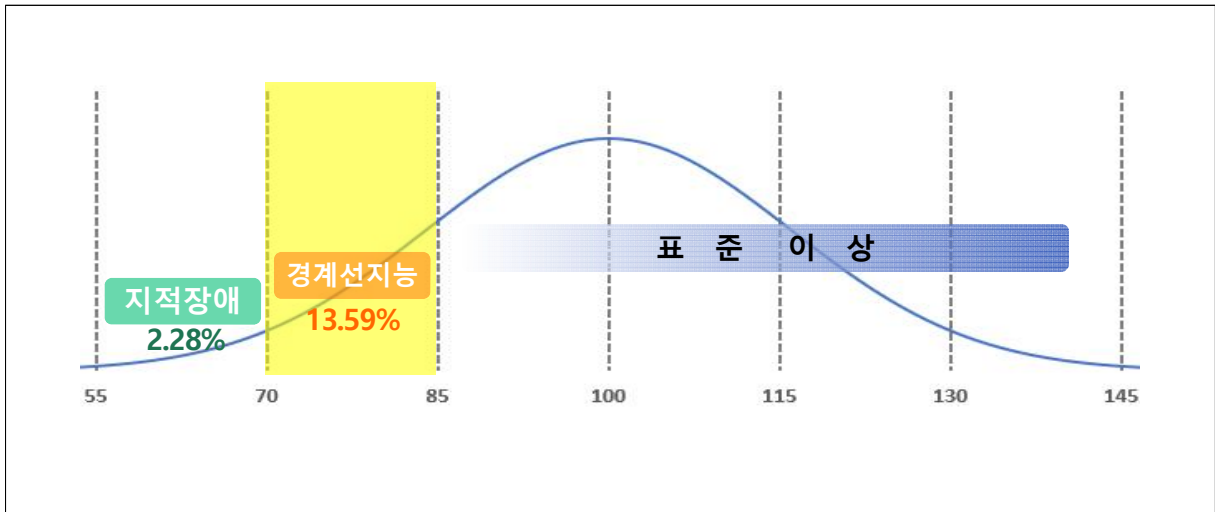
1.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경계선지능인”이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발달장애인에 해당하지는 아니하지만, 학습 능력과 인지능력의 부족으로 학습과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어 지원과 보호가 필요한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정안에서는 경계선지능인의 개념을 「발달장애인법」에 따른 발달장애인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학습능력과 인지능력의 부족으로 학습과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음.
- 통상 경계선지능인은 현행 「장애인복지법」의 하위 법령¹⁷⁾에서 정하는 지적장애 기준인 ‘지능지수 70 이하’보다는 높지만, 평균보다 다소 낮은 사람으로 인식되고 있음.
 - 지능지수는 평균 100, 표준편차 15인 표준정규분포를 따르는데, 경계선지능인은 지적장애인(-2 표준편차 이하)보다는 지능이 높으나 -1 표준편차 미만인 사람으로, 표준정규분포표에 따르면 전 인구의 약 13.59%가 경계선지능인에 해당함.

¹⁷⁾ 「장애정도판정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42호 중 “6. 지적장애 판정기준”

< 지능의 정규분포 곡선 >



자료: 교육부(2024.7.3.). 제6차 사회관계장관회의 개최[보도자료]중 별첨.

- 제정안은 경계선지능인의 개념을 정의함에 있어 ① 발달장애인을 제외하고, ② 구체적인 지능지수 수치를 요건에 적시하지 않으면서, 하위법령에서 정하는 별도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발달장애인의 경우 이미 등록장애인으로서 각종 복지서비스 등을 지원받고 있다는 점,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개념 정의가 아직까지 우리사회에서 명확하게 인식·공유되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경계선지능인에서 발달장애인을 제외하고, 그 외 구체적인 사항은 하위법령에 위임하고 있는 제정안의 경계선지능인 정의 규정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어 보임.

- 다만, 현재 추정되는 잠재적 대상자의 규모가 전 인구의 13.59%에 달할 수 있는 만큼 법의 현실적 적용을 위해서는 그 대상자를 상당히 구체화하는 작업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을 것임.

□ 따라서 경계선지능인의 법령상 개념 정의와 관련해서는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진행 중인 「경계선 지능인 현황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4.8.~2025.2.) 결과를 참고하여 의학계, 교육계, 장애인 관련기관 및 단체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과의 논의 과정을 거친 후, 이를 종합하여 신중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어 보임.

2. 가정의 책임

제6조(가정의 책임) ① 가정은 경계선지능인이 균형있게 성장·발달하는 데 1차적 책임이 있음을 인식하여야 하며, 따뜻한 사랑과 관심으로 경계선지능인이 자기 발전을 실현하고 주체적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고 편입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가정은 가족구성원들이 경계선지능 여부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관찰하여야 하며 건강한 성장·발달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정안에서는 경계선지능인의 성장·발달에 대한 1차적 책임이 가정에 있으며, 가족구성원들이 경계선지능 여부 등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사랑과 관심으로 이들이 성장하여 사회에 편입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

□ 이는 공적 지원체계보다 비공식적인 가족 돌봄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경계선지능인의 양육특성을 고려한 선언적 규정으로 이해됨.

사회복지 전달체계에서 이처럼 ‘가정의 책임’을 명시하고 있는 유사한 입법례는 「청소년 기본법」에서 찾을 수 있으며, 제정안 동조항은 이를 참고한 것으로 보임.

「청소년 기본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청소년의 권리 및 책임과 가정·사회·국가·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에 대한 책임을 정하고 청소년정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6조(가정의 책임) ① 가정은 청소년육성에 관하여 1차적 책임이 있음을 인식하여야 하며, 따뜻한 사랑과 관심을 통하여 청소년이 개성과 자질을 바탕으로 자기발전을 실현하고 국가와 사회의 구성원으로서의 책임을 다하는 다음 세대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가정은 학교 및 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서 실시하는 교육프로그램에 청소년과 함께 참여하는 등 청소년을 바르게 육성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③ 가정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유해매체물 접촉을 차단하는 등 청소년 유해 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④ 가정의 무관심·방치·억압 또는 폭력 등이 원인이 되어 청소년이 가출하거나 비행(非行)을 저지르는 경우 친권자 또는 친권자를 대신하여 청소년을 보호하는 자는 보호의무의 책임을 진다.

□ 다만, 제정안은 전반적으로 학습능력과 인지능력의 부족으로 학습과 사회적응에 어려움을 겪어 지원과 보호가 필요한 사람 즉, 사회적 약자라 할 수 있는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정책추진 및 그에 따른 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는바, 경계선지능인의 성장·발달에 대한 1차적 책임을 가정에 지우는 내용의 동 조항은 제정안의 입법취지와 다소 맞지 않은 측면이 있어 보임.

- 앞서 살펴본 유사입법례인 「청소년 기본법」의 경우는 제1조 목적 조항에서 가정·사회·국가·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에 대한 책임을 정하고자 함을 명시하고 있는데, 제정안의 경우는 제1조 목적 조항에서 경계선지능인의 생애주기별 특성에 부합하는 다면적 지원을 통하여 이들이 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명시하고 있는바,

국가와 사회의 지원이 한층 요구되는 사회적 약자인 경계선지능인에 대해 가정의 1차적 책임을 규정하는 것은 논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됨.¹⁸⁾

18)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1조(목적) 이 법은 경계선지능인의 생애주기별 특성에 부합하는 다면적 지원을 통하여 경계선지능인이 자아를 실현하고 능동적 주체로서 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3.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실태조사

제8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이전의 기본계획에 관한 분석·평가
2. 생애주기별 경계선지능인 지원 정책의 기본 방향
3. 경계선지능인 지원을 위한 분야별 시책에 관한 사항
4. 경계선지능인 지원을 위한 법령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5. 경계선지능인 조기 발굴 및 지원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사항
6. 경계선지능인 지원을 위한 자원 확보 및 배분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경계선지능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의 장에게 기본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그 밖에 기본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시행) ① 보건복지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는 다음 연도 시행계획 및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분석·평가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에게 통보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분석·평가 결과를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⑤ 보건복지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의 장에게 시행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⑥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추진실적의 분석·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제11조(실태조사)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경계선지능인 지원을 위한 정책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3년마다 경계선지능인에 관련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

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실시하는 경우 관련 기관·법인 및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 받은 관련 기관·법인 및 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과 방법, 결과 공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제정안에서는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보건복지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는 이 기본계획에 따라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하며,

경계선지능인 지원을 위한 정책수립에 활용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이 3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 이는 경계선지능인의 지원에 관한 정책을 중장기적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수립하고,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기본체계 및 과학적 정책 실시의 기반을 마련하려는 취지임.

- 참고로, 소관부처에서 5년마다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이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는 규율 방식은 「아동복지법」,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등에서 그 유사한 사례를 찾아볼 수 있음.

「아동복지법」

제7조(아동정책기본계획의 수립)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아동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5년마다 아동정책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8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매년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아동정책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제20조(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기본계획안을 작성하고,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및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후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이를 확정한다. 수립된 기본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21조(연도별 시행계획)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소관별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 및 중앙행정기관의 시행계획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아울러, 기본계획과 관련하여 제정안은 “생애주기별 경계선지능인 지원 정책의 기본 방향” 등의 내용을 기본계획에 “포함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법률 시행 후, 1년 이내 이를 구체화하기에는 어려운 사항들이 있어 보이므로,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성급하게 기본계획이 형성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어 보임.

4. 조기진단 및 개입

- 제18조(조기진단 및 개입)**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계선지능인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하여 검사방법의 개발, 미성년인 자녀를 둔 부모에 대한 정보제공 및 홍보, 진단검사 실시, 조기진단 전문인력 양성 등 필요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미성년자가 경계선지능인으로 의심되는 경우 그 보호자의 신청에 따라 진단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라 진단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그 결과를 미성년자와 그의 보호자에게 알려야 하며, 결과에 따라 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제26조에 따른 한국경계선지능인개발원, 제33조에 따른 경계선지능인 지원센터 등 관계 기관과 연계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④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아동복지법」 제52조의 아동복지시설, 「청소년기본법」 제17조의 청소년시설 등 아동과 청소년을 교육·돌봄·보호 등을 위한 기관·단체는 경계선지능인의 조기진단 정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조기진단 실시 및 개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정안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경계선지능인을 조기 발견하기 위한 검사방법의 개발, 정보 제공 및 홍보, 진단검사 실시, 전문인력 양성 등의 정책 수립 강구 의무를 명시하고 있으며,

보호자의 신청에 의해 진단검사를 실시할 수 있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관계 기관과 연계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음.

□ 이는 경계선지능인을 조기에 발견하고, 적절한 지원을 신속하게 받게 함으로써, 성인이 되어서 겪을 어려움을 줄이고, 사회에서 소외되거나 범죄, 빈곤 등과 같은 문제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 가족의 부담과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자 하는 취지로 보임.

□ 한편, 이 같은 ‘조기진단 및 개입’에 관해서는 「발달장애인법」의 유사입법례를 참고할 수 있는데, 동 법에서는 발달장애가 의심되는 영유아에 대한 검사 비용 지원, 정보제공, 가족상담 등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경계선지능인 조기진단의 경우에도 그 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임.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조기진단 및 개입)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의 장애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하여 검사도구의 개발, 영유아를 둔 부모에 대한 정보제공 및 홍보 등 필요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가 의심되는 영유아에 대하여 발달장애 정밀진단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른 정밀진단에서 발달장애가 있거나 발달장애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진단된 영유아에 대하여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1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와 연계·협력하여 해당 영유아와 그 가족에게 발달장애의 예방·치료에 관한 정보제공, 영유아의 정상발달 및 양육방법에 관한 정보제공, 가족상담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지원 대상, 지원의 내용 및 제3항에 따른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5. 교육 지원 등

- 제20조(교육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계선지능인인 아동·청소년(이하 “경계선지능학생”이라 한다)의 나이, 수학적능력(修學能力), 그 밖의 교육 여건 등을 고려하여 경계선지능학생이 맞춤형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계선지능학생의 방과 후 활동을 지원하고 그 가족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경계선지능학생 방과 후 활동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계선지능학생을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 및 방과 후 활동서비스를 실시하는 학교에 그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④ 제1항에 따른 맞춤형 교육 지원, 제2항에 따른 방과 후 활동서비스 제공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 제정안은 경계선지능학생(경계선지능인인 아동·청소년)이 나이, 수학적능력, 교육 여건 등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 및 방과 후 활동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과 이에 대한 예산 지원 및 하위법령 제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맞춤형 교육 및 방과 후 활동서비스를 실시하는 학교에 경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맞춤형 교육 및 방과 후 활동서비스 제공 관련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함.

□ 개정안과 유사하게 특화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근거 법률이 몇 가지 있는바, ① 「초·중등교육법」¹⁹⁾에서는 「장애인 등에 대한

19) 「초·중등교육법」 제28조(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한 교육)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학생들(이하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이라 한다)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업일수와 교육과정을 신축적으로 운영하는 등 교육상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성격장애나 지적(知的) 기능의 저하 등으로 인하여 학습에 제약을 받는 학생 중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에 따른 학습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학생

특수교육법」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지적, 자폐성장애 등 포함)²⁰⁾는 아니지만 성격장애나 지적 기능의 저하 등으로 인하여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② 「기초학력 보장법」²¹⁾에서는 기초학력진단검사 결과에 따라 학

2. 학업 중단 학생

3. 학업 중단의 징후가 발견되거나 학업 중단의 의사를 밝힌 학생 등 학업 중단 위기에 있는 학생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한 교육의 체계적 실시를 위하여 매년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기초로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의 현황 및 교육 상황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운용할 수 있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게 균등한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한다.

⑤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위하여 필요한 교재와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여야 한다.

⑥ 교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의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관련 연수를 이수하여야 하고, 교육감은 이를 지도·감독 및 지원하여야 한다.

⑦ 학교의 장은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게 학업 중단에 대하여 충분히 생각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그 기간을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⑧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한 판단기준 및 제7항에 따른 충분히 생각할 기간과 그 기간 동안의 출석일수 인정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⑨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제7항 및 제8항에 따른 기간 동안 학생이 교육과 치유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⑩ 제3항에 따른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운용에 필요한 정보 수집 범위, 방법, 절차, 보존기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 ①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특수교육이 필요한 사람으로 진단·평가된 사람을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한다.

1. 시각장애

2. 청각장애

3. 지적장애

4. 지체장애

5. 정서·행동장애

6. 자폐성장애(이와 관련된 장애를 포함한다)

7. 의사소통장애

8. 학습장애

9. 건강장애

10. 발달지체

11. 그 밖에 두 가지 이상의 장애가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

21) 「기초학력 보장법」 제8조(학습지원대상학생의 선정 및 학습지원교육) ① 학교의 장은 기초학력진단검사 결과와 학급담임교사 및 해당 교과교사의 추천, 학부모 등 보호자에 대한 상담결과 등에 따라 학습지원교육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학생을 학습지원대상학생으로 선정할 수 있다.

② 학교의 장은 학습지원대상학생의 학력 수준과 기초학력 미달 원인 등을 고려하여 학습지원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은 필요한 경우 보호자에 대한 교육·상담을 실시하거나 학교 외부의 전문기관과 연계하여 학습지원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④ 학교의 장은 학습지원교육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제9조에 따른 학습지원 담당교원, 「학교보건법」 제15조에 따른 보건교사, 「초·중등교육법」 제19조의2에 따른 전문상담교사 등이 함께 학습지원교육을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

⑤ 학교의 장은 학생들의 기초학력 보장을 위하여 특별한 학습지원이 필요한 교과목의 수업에 보조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학습지원대상학생 선정, 학습지원교육 및 보조인력 배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습지원대상학생을 선정하여 특별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각각 근거 규정을 두고 있음.

- 경계선지능인은 그 범위가 넓어서 전 국민의 13.59%가 해당될 수 있으므로, 학생층의 비율도 이와 비슷할 것으로 예상됨.

따라서 경계선지능학생에 대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적절하지 못한 측면이 있으므로, 기존 법률에 따른 특수교육을 활용하는 것이 주된 추진 방향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이러한 측면에서 앞서 언급한 「초·중등교육법」과 「기초학력 보장법」에서 경계선 지능학생에 대한 특수교육의 명시적 근거를 신설하거나, 제정안에 양 법률에서 지원하고 있는 교육서비스 제공 범위에 경계선지능학생이 포함되도록 명시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임.

6. 고용 및 직업훈련 등

제22조(고용 및 직업훈련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계선지능인이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직업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직업 소개, 일자리 창출, 창업지원 등 고용촉진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경계선지능인의 능력과 특성에 맞게 취업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직업훈련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고용촉진 및 직업훈련 지원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경계선지능인에 대해 일자리 창출, 창업지원 등과 같은 고용촉진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음을 명시하면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직업훈련을 지원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 다만, 제정안에서는 직업훈련 지원 주체를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고 있는데, 직업훈련에 관한 기본법이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이고, 동 법이 교육부와 고용노동부 공동소관임을 고려하면, 직업훈련의 지원 주체를 교육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보건복지부와 이들 부처 공동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어 보임.
- 또한, 경계선지능인의 범위는 정상인에 가까운 사람부터 지능부족이 상당히 정상범주에서 먼 사람까지 다양할 것이므로, 모든 경계선지능인을 지원대상으로 하기보다는 그 범위를 하위법령에서 구체화할 수 있는 여지를 둘 필요가 있어 보임.

7. 경계선지능인 지원기관

제26조(한국경계선지능인개발원 설립 등) ① 제4조에 따른 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경계선지능인 관련 조사·연구 및 정책개발·복지진흥 등을 위하여 한국경계선지능인개발원(이하 “개발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개발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경계선지능인의 성장·발달, 사회 적응, 자립, 복지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분석·관리, 조사·연구·정책개발
2. 경계선지능인 선별·발굴을 위한 기초검사 및 진단검사 지원
3.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 등 경계선지능인 관련 교육, 홍보, 컨설팅
4. 경계선지능인 지원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
5. 경계선지능인 직업훈련지원 및 일자리 개발·지원
6. 경계선지능인 권리침해 및 권리구제 관련 제도개선
7. 경계선지능인 지원 관련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8. 경계선지능인 관련 기관 간의 연계 및 지원
9. 경계선지능인 지원과 관련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10. 그 밖에 개발원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수사업

③ 개발원은 법인으로 한다.

④ 개발원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28조(사업계획서의 제출 등) ① 개발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사업연도가 시작되기 전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개발원은 회계연도가 종료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회계연도의 결산서를 작성하고 감사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인회계사나 회계법인을 선정하여 회계감사를 받은 후 다음 회계연도 2월 말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고, 3월 말일까지 승인을 받아 결산을 확정하여야 한다.

제29조(보조금 및 출연 등) ①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개발원의 사업 및 운영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② 개인·법인 또는 단체는 개발원의 운영 또는 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출연하거나 기부할 수 있다.

제33조(경계선지능인지원센터) ① 시·도지사는 경계선지능인의 권리보호 활동, 당사자와 그 가족에 대한 상담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계선지능인지원센터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에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필요성을 고려하여 경계선지능인지원센터를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설치할 수 있다.

② 시·도지사는 경계선지능인지원센터를 시·군·구에 설치하는 경우 둘 이

상의 시·군·구를 통합하여 하나의 경계선지능인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경계선지능인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관할 구역의 경계선지능인 수 등을 고려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③ 경계선지능인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개인별지원계획의 수립
2. 경계선지능인을 위한 복지지원 정보의 제공 및 연계
3. 경계선지능인 가족 및 관련 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교육지원
4. 지원서비스제공기관에 대한 정보의 축적 및 관리
5. 경계선지능인 조기 발견과 인식개선을 위한 지역사회 홍보
6. 경계선지능인 및 그 가족에 대한 상담지원
7. 경계선지능인 권리침해 모니터링 및 권리구제 지원
8.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사례관리
9. 그 밖에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제1항에 따른 경계선지능인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및 기능, 경계선지능인지원센터의 장과 소속 직원의 자격·직무 및 배치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계선지능인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 제정안에서는 경계선지능인 관련 정책개발·복지진흥 등을 위하여 한국경계선지능인개발원을 설립하고, 시·도지사는 경계선지능인지원센터를 설치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음.

< 한국경계선지능인개발원 및 경계선지능인지원센터 관련 규정 비교 >

구분	한국경계선지능인개발원	경계선지능인지원센터
설치 주체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따라 설립	시·도지사
수행업무	경계선지능인의 성장·발달, 사회 적응, 자립, 복지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분석·관리, 조사·연구·정책개발	-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개인별지원계획의 수립 - 경계선지능인을 위한 복지지원 정보의 제공 및 연계

구분	한국경제선지능인개발원	경제선지능인지원센터
	• 경제선지능인 선별·발굴을 위한 기초검사 및 진단검사 지원 • 경제선지능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 등 경제선지능인 관련 교육, 홍보, 컨설팅 • 경제선지능인 지원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 • 경제선지능인 직업훈련 지원 및 일자리 개발·지원 • 경제선지능인 권리침해 및 권리구제 관련 제도 개선 • 경제선지능인 지원 관련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 경제선지능인 관련 기관간의 연계 및 지원 • 경제선지능인 지원과 관련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 그 밖에 개발원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수사업	• 경제선지능인 가족 및 관련 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교육지원 • 지원서비스제공기관에 대한 정보의 축적 및 관리 • 경제선지능인 조기 발견과 인식개선을 위한 지역사회 홍보 • 경제선지능인 및 그 가족에 대한 상담지원 • 경제선지능인 권리침해 모니터링 및 권리구제 지원 • 경제선지능인에 대한 사례관리 • 그 밖에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운영 및 예산	• <u>사업계획서 등을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받아야 함</u> • <u>국가는 예산으로 사업 및 운영에 드는 경비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음</u>	• <u>경제선지능인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및 기능, 경제선지능인지원센터의 장과 소속 직원의 자격·직무 및 배치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함</u> • <u>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음</u>

□ 제정안에서는 경제선지능인에 대한 지원 서비스 전달체계로 한국경제선지능인개발원과 경제선지능인지원센터를 설치하여, 경제선

지능인에 관한 정책개발, 복지진흥 및 권리보호 업무 등을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고자 함.

- 발달장애인의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중앙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설치하여야 하고, 시·도지사는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설치하여야 함을 규정하면서, 그 운영을 공공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반면,²²⁾

제정안에서는 「민법」상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 별도 법인으로 한국경제선지능인개발원을 설치하고, 사업계획서, 예산서, 결산서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승인하도록 함으로써 경제선지능인에 대한 국가의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 위탁 운영 방식은 상대적으로 국가의 책임성이 약하고, 예산 지원 등의 한계로 종사자의 처우 개선에도 다소 한계가 있을 수 있음.

- 이 같은 전달체계의 규율 방식은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과 지방청

22)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발달장애인지원센터)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4조에 따른 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발달장애인에 대한 통합적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중앙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발달장애인의 권리보호 활동, 당사자와 그 가족에 대한 상담 등을 담당하는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에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필요성을 고려하여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시·군·구에 설치할 수 있다.

③ 시·도지사는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시·군·구에 설치하는 경우 둘 이상의 시·군·구를 통합하여 하나의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관할 구역의 발달장애인 수 등을 고려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설치기준과 운영, 직원의 자격과 배치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⑤ 발달장애인지원센터는 발달장애인(보호자를 포함한다)이 참여하는 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⑦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41조(위임·위탁) ② 보건복지부장관과 시·도지사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발달장애인지원센터는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8조에 따른 중앙장애아동지원센터 또는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와 통합하여 운영하도록 할 수 있다.

소년활동진흥센터의 설치를 규정하고 있는 「청소년활동 진흥법」과 유사한 것으로 보임.

- 다만, 한국경제선지능인개발원의 업무 중 정책개발이 아닌 집행업무는 경제선지능인지원센터로 이관하는 방안이 검토될 수 있을 것임. 예컨대 직업훈련지원 및 일자리 개발·지원, 지원 관련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등의 업무는 경제선지능인지원센터에서 수행하는 것이 보다 적절할 것으로 보임.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6조(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의 설치) ①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청소년육성(이하 “청소년육성”이라 한다)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기 위하여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이하 “활동진흥원”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1. 청소년활동,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청소년복지, 같은 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청소년보호에 관한 종합적 안내 및 서비스 제공
2. 청소년육성에 필요한 정보 등의 종합적 관리 및 제공
3. 청소년수련활동 인증위원회 등 청소년수련활동 인증제도의 운영
4. 청소년 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
5. 청소년활동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6. 국가가 설치하는 수련시설의 유지·관리 및 운영업무의 수탁
7.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개발한 주요 청소년수련거리의 시범운영
8. 청소년활동시설이 실시하는 국제교류 및 협력사업에 대한 지원
9. 청소년지도자의 연수
- 9의2. 제9조의2에 따른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계획의 신고 지원에 대한 컨설팅 및 교육
10. 제18조의3에 따른 수련시설 종합 안전·위생점검에 대한 지원
11. 수련시설의 안전에 관한 컨설팅 및 홍보
- 11의2. 제18조의2에 따른 안전교육의 지원
12. 그 밖에 여성가족부장관이 지정하거나 활동진흥원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활동진흥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활동진흥원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6조의2(정관) 활동진흥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에 관한 사항
5.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제6조의3(임원) ① 활동진흥원에 이사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② 이사장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임원추천위원회”라 한다)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여성가족부장관이 임명한다.

③ 상임이사는 활동진흥원 이사장이 임명한다.

④ 비상임이사(활동진흥원의 정관에 따라 당연히 비상임이사로 선임되는 사람은 제외한다)는 여성가족부장관이 임명한다.

⑤ 감사는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하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사람 중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임명한다.

⑥ 이사장의 임기는 3년,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각각 2년으로 하되, 1년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제6조의4(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① 활동진흥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매 사업연도 시작 전까지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활동진흥원은 회계연도가 종료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회계연도의 결산서를 작성하고 감사원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인회계사나 회계법인을 선정하여 회계감사를 받아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의5(자료의 요청 등) ① 활동진흥원은 제6조제1항제2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공공기관 등에 대하여 간행물이나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상당한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활동진흥원은 제1항에 따라 제공된 간행물이나 자료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6조제1항제2호의 사업에 종사하는 임직원 및 임직원이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의6(보조 및 출연 등) ①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진흥원의 사업 및 운영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出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② 개인·법인 또는 단체는 활동진흥원의 사업 또는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출연 또는 기부할 수 있다.

제6조의7(「민법」의 준용) 활동진흥원에 관하여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7조(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의 설치 등) ①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및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해당 지역의 청소년활동을 진흥하기 위하여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이하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지역 청소년활동의 요구에 관한 조사
2. 지역 청소년 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
3. 청소년수련활동 인증제도의 지원
4. 인증받은 청소년수련활동의 홍보와 지원
5. 청소년활동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6. 청소년활동에 대한 교육과 홍보
7. 제9조의2에 따른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계획의 신고에 대한 지원
8. 제9조의4에 따른 정보공개에 대한 지원
9. 그 밖에 청소년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는 제2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활동진흥원과 연계·협력한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이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는 한국경제선지능인개발원과 경제선지능인지원센터 간 역할분담과 협력관계 등이 다소 불명확한 측면이 있어 전달체계의 혼선이 야기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8. 지역사회통합지원체계 구축·운영

- 제35조(지역사회통합지원체계 구축·운영)** ① 시·도지사는 관할 구역의 경계선지능인을 조기에 발견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경계선지능인지원센터 등이 협력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경계선지능인 지역사회통합지원체계(이하 “통합지원체계”라 한다)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 ② 국가는 통합지원체계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③ 통합지원체계의 업무와 기관·단체의 범위 등 통합지원체계의 운영·구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④ 통합지원체계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및 시·군·구에 통합지원체계 전담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
- ⑤ 제4항에 따른 통합지원체계 전담기구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담공무원 및 민간 전문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 ⑥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통합지원체계 전담기구 설치, 전담공무원, 전문인력의 배치 등 통합지원체계 전담기구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제정안은 시·도지사가 공공기관, 경계선지능인지원센터 등의 협력을 기반으로 경계선지능인의 조기발견 및 체계적 지원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는 지역사회통합지원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음.

□ 이는 경계선지능인의 특성상 조기 개입과 지속적인 지원이 필수적이라는 점에서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그리고 경계선지능인지원센터 등 각각의 지원체계가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하는 통합전담기구를 구축하여 경계선지능인들이 소외되지 않고 자립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협력과 지원을 적시에 제공하고자 하는 취지로 보임.

□ 다만, 제정안에서는 한국경계선지능인개발원의 수행 업무로 ‘경계

선지능인 선별·발굴을 위한 기초검사 및 진단검사 지원’, ‘경계선 지능인 관련 기관 간의 연계 및 지원’을 명시하고 있으며,

경계선지능인지원센터의 수행업무로 ‘경계선지능인을 위한 복지지원 정보의 제공 및 연계’,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사례관리’ 등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역사회통합지원체계의 업무 중 핵심적인 사항은 이미 제정안에 반영되어 있는 것으로 보임.

따라서 제정안에서의 지역사회통합지원체계의 업무를 보다 구체적으로 한국경계선지능인개발원과 시·도지사가 설립한 경계선지능인지원센터에 위임하는 규정으로 대체하는 방안도 검토될 수 있을 것임.

- 이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에서는 경계선지능인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하는 서비스 전달체계와 지역사회통합지원체계가 중복되는 측면이 있고,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및 시·군·구에 설치하는 통합지원체계 전담기구와 한국경계선지능인개발원 및 경계선지능인지원센터와의 관계가 다소 불분명한바, 서비스 전달체계를 명확하게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9. 경계선지능인교육운영위원회

제36조(경계선지능학생 교육운영위원회) ① 제20조제1항에 따른 맞춤형 교육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중앙경계선지능학생 교육운영위원회를, 교육감 소속으로 시·도경계선지능학생 교육운영위원회를 각각 둔다.

② 중앙경계선지능학생 교육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시·도경계선지능학생 교육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의 교육규칙으로 각각 정한다.

□ 제정안은 경계선지능학생에 대한 맞춤형 교육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교육부장관과 시·도의 교육감 소속으로 각각 중앙 및 시·도경계선지능학생 교육운영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음.

□ 제정안의 취지는 경계선지능학생의 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은 전문성을 갖춘 교육부장관과 교육감 소속 중앙 및 시·도경계선지능학생 교육운영위원회에서 담당하도록 하여 통상적인 복지지원에 관한 사항과 분리하려는 것으로 보임.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서도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 지방교육의 특수성 등을 살리기 위하여 교육에 관한 사항은 일반 행정과 구별하여 교육감이 관장하도록 하고 있음.²³⁾

□ 이러한 제정안에 대하여 교육부와 행정안전부는 기존 위원회 또는 새롭게 통합하여 신설되는 위원회가 담당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음.

23)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1조(목적) 이 법은 교육의 자주성 및 전문성과 지방교육의 특수성을 살리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과학·기술·체육 그 밖의 학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설치와 그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교육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교육부**에서는 경계선지능학생위원회는 「기초학력 보장법」²⁴⁾에 따른 ‘기초학력 보장위원회’와 지원 대상과 내용이 중복될 수 있으며,

현재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교육기본법」에 기존 ‘기초학력 보장위원회’를 포함한 ‘학교교육지원위원회’를 새롭게 설치하고자 하는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정비를 위한 과학·수학·정보 교육 진흥법 등 1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정부제출, 의안번호 제2201999호)가 교육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 중인 점을 고려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 **행정안전부**는 경계선지능학생교육운영위원회는 경계선지능학생의 맞춤형 교육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자문위원회로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²⁵⁾에 따라 별도의 위원회를 신설하기보다 「기초학력 보장법」에 따른 ‘기초학력 보장위원회’ 활용 또는 「특수교육법」에 따라 설치된 ‘중앙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24) 「기초학력 보장법」 제6조(기초학력 보장위원회의 설치 등) ① 기초학력 보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기초학력 보장위원회를 둔다.

1. 종합계획의 수립
2.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평가
3. 기초학력 보장 관련 제도 개선
4. 기초학력 보장과 관련된 각종 조사·연구 및 정책의 분석·평가
5. 그 밖에 기초학력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의 장에게 그 소속 공무원의 출석이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5)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중복 위원회의 설치 제한 등) ① 행정기관의 장은 그 기관 또는 관련 기관 내에 설치되어 있는 위원회와 성격과 기능이 중복되는 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성격·기능이 유사하거나 관련이 있는 복수의 위원회를 하나의 위원회와 분과위원회, 전문위원회 등의 체계로 연계하여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제7조의2(정책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 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정책에 관한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반영하기 위하여 정책자문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제7조에 따라 성격과 기능이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위원회가 설치되지 아니하도록 위원회를 새로 설치하는 대신 정책자문위원회를 활용할 수 있다.

분과·전문위원회 또는 교육부 정책자문위원회 산하의 분과·전문위원회 형태로 운영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 그러나 이러한 경계선지능학생의 교육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여야 한다는 근거 규정은 필요해 보이므로, 제정안과 같이 별도의 위원회를 설치하지 않더라도 교육부장관으로 하여금 경계선지능학생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는 규정은 있어야 할 것임.

- 시·도의 경우는 기존의 관련 위원회가 담당할 수 없으므로, 근거 규정 신설이 필요할 것임.

10.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정안은 시행일에 관한 부칙을 두고 있으며,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 아직까지 경계선지능인에 대해 명확한 기준이 정립되지 않은바, 이에 관한 실태조사 결과 분석 및 전문가·이해당사자·관계부처 간의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

한국경계선지능인개발원 설립, 시·도경계선지능인지원센터 설치, 경계선지능인지원정보시스템 구축, 경계선지능학생위원회 운영 등에는 부처 간 협조, 시범사업, 예산배정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제정안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적절한 유예기간이 필요해 보임.

문 의 처

02)6788-5502

〈참고자료 1: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현황〉

연 번	지 방 자 치 단 체	조 례 명
1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강릉시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조례」
2	강원특별자치도	「강원특별자치도 경계선지능인 지원 조례」
3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광역시 대덕구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조례」
4	대전광역시 동구	「대전광역시 동구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조례」
5	전라남도 무안군	「무안군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조례」
6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조례」
7	부산광역시 수영구	「부산광역시 수영구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조례」
8	서울특별시 강북구	「서울특별시 강북구 경계선지능인 지원 조례」
9	서울특별시 노원구	「서울특별시 노원구 경계선지능인 지원 조례」
1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경계선지능인 지원 조례」
11	충청남도 아산시	「아산시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조례」
12	울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계선지능인 지원 조례」
13	울산광역시 중구	「울산광역시 중구 경계선지능인 지원 조례」
14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원주시 경계선지능인 지원 조례」
15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전주시 경계선지능인 지원 조례」
16	충청북도 청주시	「청주시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조례」
17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춘천시 경계선지능인 지원 조례」
18	충청북도	「충청북도 경계선지능인 지원 조례」
19	경기도 평택시	「평택시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조례」

주 1):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 ‘느린학습자’ 지원 조례,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 조례 등을 제정하고 있지만, 이는 ‘교육’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학교에 재학 중인 ‘학교 내 학생’에게만 특화된 조례라는 점에서 위 사례에서는 제외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LSW/main.html>) 검색 후, 재구성